

안건번호	제26-8호 (제472차 이사회)
보고년월일	2026. 5. 29.

보
고
사
항

전차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

제 출 자	주 택 도 시 보 증 공 사 기 획 조 정 실 장 박 호 찬
제출년월일	2026. 5. 29.

1. 제470차 이사회 개최결과

가. 회의일시 : 2026. 4. 17.(금) 11:00

나. 회의장소 : 여의도 태흥빌딩 7층 1회의실

다. 참여현황 : 이사 11명 중 11명 참석

라. 회의결과 : 보고사항 1건 원안접수, 의결사항 12건 원안의결

구분	안건번호	안건명	회의결과
보고사항	제26-7호	전차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	원안접수
의결사항	제26-16호	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안	원안의결
	제26-17호	비상임이사 선임안	원안의결
	제26-18호	미분양주택일시매입사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	제26-19호	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	제26-20호	후분양대출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	제26-21호	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	제26-22호	리모델링자금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	제26-23호	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	제26-24호	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출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	제26-25호	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	제26-26호	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의결
	제26-27호	2026년 사회공헌 및 지역발전 기부금 출연안	원안의결

마. 주요 경영제언 및 조치현황

제언사항	조치현황
○ 이사회 안건의 원만한 심의를 위해 주요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설명 필요 [김득의 이사]	○ 주요·쟁점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자료 공유를 강화하여 이사회의 효율적 심의 지원 추진

제언사항	조치현황
○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사항 발굴 필요 [김성수 이사]	○ 건설업계 의견*을 고려하여,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추가적 제도개선 추진 * 사업장 공정률 완화 및 환매기간 확대
○ 사업장 심사등급과 무관하게 고액 보증 건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의 상시 점검 및 관찰 필요 [김성수·심오택 이사]	○ 영업부서 간담회·교육 실시 및 심사 현황 상시 점검 등 본사 차원의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
○ 임대보증금보증 보증기간 연장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[김성수·윤호진·두철·김득의 이사]	○ 개선사항 적용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필요시 추가적 제도개선 검토 예정

2. 제471차 이사회 개최결과

가. 회의일자 : 2026. 5. 11.(월)

나. 회의방법 : 서면결의

다. 참여현황 : 이사 11명 중 10명 서명

라. 회의결과 : 의결사항 1건 원안의결

구분	안건번호	안건명	회의결과
의결사항	제26-28호	상근감사위원 선임안	원안의결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및 규정 : 별첨

나. 조치사항 : 이사회 회의록 및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공시
(공사 홈페이지 및 통합공시시스템)

【별첨】

관련 법령 및 규정

□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

제61조(이사회 회의록 작성) ①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, 장소, 참석자 명단,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내용,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의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

□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

제34조(이사회 회의록 공개) 공공기관 이사회 회의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체 홈페이지와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최소화하고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□ 이사회규정

제8조 (의결 및 보고사항) ① ~ ③ (생략)

④ 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국정감사,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회계 감사와 동법률 제52조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
2.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(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한다)
3.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의 업무수행실적
4.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나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